
2014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재예방우수 유공자 해외 산업시찰 결과

2014. 7

교 육 미 디 어 실

목 차

I. 산업시찰 개요	1
II. 주요 시찰내용	3
1. 유관기관 방문 : MUSEUM OF FIRE	
2. 유관기관 방문 : STRASFIELD COUNCIL	
III. 시사점 및 소감	14
IV. 시찰자 명단, 관련 사진 등	15

2014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재예방활동 유공자 해외산업시찰 결과

I. 산업시찰 개요

1. 목 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선진국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우수사업장을 견학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전의식 함양과 선진안전기술 습득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에 기여

※ 추진근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3조(혜택부여)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의견을 들어 산재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시찰 및 산업재해예방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
- 2000년부터 지방고용노동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해외산업시찰 실시

2. 시찰기간 : 2014. 6. 7(토) ~ 6. 13(금)[7일]

3. 시찰국가 : 호주

4. 시찰대상

- 호주 안전보건 유관기관 2개소

5. 시찰자 : 8명

- '14년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6명(지방노동청별 각 1명)
- 공단 발표대회 우수 성과기관 1명 및 인솔책임자 1명

6. 산업시찰 일자별 세부일정

일자	교통 및 시간		주요 일정
제1일 6월7일 (토)	국제선 (KE121)	18:5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제2일 6월8일 (일)	전용버스	06:20 전일	○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 블루마운틴 문화탐방 - 에코포인트, 세자매봉, 퀘도열차 등
제3일 6월9일 (월)	전용버스	전일	○ 유관기관 방문 - MUSEUM OF FIRE 화재방지체계 견학 ○ 시드니 북부 해안 자연체험 - 돌핀크루즈 야생돌고래, 포트스테판 자연체험
제4일 6월10일 (화)	전용버스	전일	○ 시드니 남부 울릉공 국립공원 문화탐방 - 울릉공 국립공원
제5일 6월11일 (수)	전용버스	전일	○ 유관기관 방문 - Strathfield 시청 방문 ○ 시드니 시내 문화탐방 -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크루즈체험 등
제6일 6월12일 (목)	전용버스	전일	○ 시드니 동부지역 문화탐방 - 더들리페이지, 갭팍, 본다이비치 등
제7일 6월13일 (금)	국제선 (KE122)	07:45 17:40	○ 시드니 공항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II. 주요 시찰내용

1. 유관기관 방문 : 소방박물관(MUSEUM of FIRE)

- 소재지 : At 1 Museum Drive, Penrith. On the corner of Castlereagh Rd
- 소개
 - 비영리박물관
 - 30년 이상 소방 박물관 및 소방 용품 솜을 선도
 - 발생한 모든 수익은 화재의 위험에 대한 교육과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활용
 - 호주 소방관련 역사와 소방용품들을 전시하여 화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개관 : 주 7일(월요일 ~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 유소년관 : 성냥은 장난감이 아니며, 화재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파괴할 수 있으며, 화재가 나면 통제하기 어려운 점과 화재시 요령을 쉽고 간략하게 제시
 - 행동요령 : "STOP", "DROP", "ROLL"
- 청소년관 : 박물관은 재미의 영역을 가지고 장래 소방관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소방관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포함 : 화재 안전 활동, 컴퓨터 게임, 퍼즐 및 소방차 시뮬레이터, 소방관이 되고 싶은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전시관
- 주요 전시품
 - 소방차 : 18세기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손수레, 말수레, 소방자동차 등을 실제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소방용 차량을 시대별, 종류별로 다양하게 전시
 - 유니폼 : 소방관 복장, 헬멧, 배지, 버튼, 패치 등을 전시
 - 통신장비 : 전화, 라디오, 알람체계 등
 - 소방장비 : 말, 노즐, 축, 소화기, 유해물질 등
 - 보호구 : 호흡장치, 내열복, 내화학복장 등
 - 기타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사진, 용품 등을 다양하게 전시하여 교육 및 관람에 활용

2. 유관기관 방문 : Strathfield 시청 방문

<Strasfield Council 방문결과>

○ 위치 및 소개

- 시드니 내 서쪽 지역에 위치한 중간 크기의 지방자치행정구역(우리나라의 구청에 해당)으로 몇 개의 구역을 관장함.
- 면적은 약 14.1 평방 킬로미터, 인구는 약 38,358명(2013년 6월 30일자)
- 시의회는 의원에서 선출된 시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있음.
- 일반행정관은 의회에서 임명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직원은 일반 행정관이 임명함.
- 시장은 Cr Daniel Bott 이고 일반행정관은 David Backhouse 임

○ 역사

- 스트라스 필드 시의 지방자치제 역사는 교외지역인 Redmire(스트라스 필드 이름), Homebush와 Druitt 타운(지금의 스트라스 필드 남부지역)의 교외를 포함하여 통합 스트라스 필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정관을 1885년 6월에 확정하면서 시작되었음.
- 부시 시의회는 1906년 6월 13일 설립되었음. 1947년, 부시 시의회는 스트라스필드 시의회에 합병되었고, 1949년 1월 1일에서 Enfield의 지방자치체는 폐지되고 이전의 West Ward는 스트라스필드 지자체에 편입되었음.
- NSW 지방 자치법을 적용했을 때 지방정부 구조의 변경 사항은 1993년 7월 1일에 만들어짐. 이 법은 시장과 의원의 책임을 변경하고, 일반 행정관과 명확하게 기능을 분리하였음. 새로운 법에 따라 지자체의 운영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있고 투명하게 지방정부를 운영할 것이 요구되었음.

○ 방문개요

- 면담자 : Ketcy (시장의 홍보비서관)
- 동 시에는 한국인 이민자가 다수(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됨.
- 한국인 출신의 옥상두 의원이 부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중임.

- 한국의 가평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추진중임.
- 시에는 약 60여개의 공원이 있음.

○ 호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 호주가 안전에 관한 법령이 매우 엄격함.
-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중앙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의 안전에 관한 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가의 안전과 국방을 관장하고, 주정부에는 의료, 교육, 양노 등을 위임하고, 시에는 위생, 청소 등과 같은 주민생활에 관련된 체계를 관장함.
- 시에는 Ranger(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스트라스필드 시에는 4명의 Ranger를 두고 있음)
- 안전관련 교육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교육비는 5일 교육시 약600불)

○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 개정 근로 보건 및 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이하 WHS Act)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더욱 바빠지고 있음.
- 과거 '직업 보건 및 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HS Act)'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령의 명칭은 '근로 보건 및 안전 법(WHS Act)'임.
-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단연 개정 WHS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해석이 화두가 됨.
-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법안에는 중요한 새로운 용어들이 포함되어 한층 더 혼란과 혼돈을 가중시킴.
- 혼란의 핵심은 고용주를 비롯해 책임 있는 사업 종사자를 통칭하는 'PCBU'란 새로운 용어임.
- "PCBU"가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하여 영어("Person Conducting Business or Undertaking")로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함.
- 직장 내 보건과 안전에 관해서 고용주(employer)란 용어는 사라지고 더욱 포괄적으로 작업을 책임진 관계자를 통칭해서 PCBU란 새로운 조합어가 탄생됨. 건설업의 예를 들면, PCBU는 개발업자, 빌더, 하청업자 등을 포괄.

- 또한, 피고용인(employee)이란 용어도 사라지고 PCBU에서 근로자(worker)란 용어가 등장함.
- 고용 관계가 피라미드식 하청(subcontracting 혹은 outsourcing) 구조를 이루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한 현재의 상태에서 이제는 고용주(employer)와 피고용인(employee)이란 용어가 부적절해졌고, 작업 지시에 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PCBU란 용어가 탄생된 것임.
- 새롭게 발효된 근로 보건 및 안전법(WHS Act)이 모든 직장 및 사업장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게 된 시점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과 함께 사업체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의무 사항으로 PCBU는 개정법의 취지와 핵심 사안임
- 바로 개정 근로 보건 및 안전법(HWS Act)에서는 시드니 한인회 같은 커뮤니티 봉사단체도 PCBU로 규정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임.
- 과거의 OHS법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모호했으며, 한인회 종사자 역시 작업장(시드니 한인회관)의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이 없었으나, 공공재해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여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다만, PCBU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정확한 해석이 유보됨.

<호주의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책 소개>

1] 석면정책

제목	석면정책
적용일자	2011. 3. 1
개정	2012. 4. 30
기록	DW no: 459368
관련법률	-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2011 -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perations Act(POED) 1997 and POED Regulation - Environmental Protection & Assessment Act(EP&A) 1979 - Environmental Protection & Planning Assessment Regulation 2000

	-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Exempt & Complying Development Codes) 2008
관련정책	- Work Health & Safety Policy - WorkCover Authority Guidelines - Australian Standard AS 2601-2001

1.0 서론

1.1 제목 및 서론

- 이 정책은 석면정책이라 함. 이 정책은 2011년 3월 1일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음. 다음 사항이 개정되었음.

날짜	분류	개정사항
2012년 4월 30일	행정	새로운 작업보건안전법 입법에 따른 개정

1.2 배경 및 정책의 목적

- 석면은 알려진 발암물질이며, 섬유의 흡입이 폐암, 중피종과 석면폐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석면은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건축산업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1987년 이전에 지어진 Strathfield 지방정부 지역의 많은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음. 석면은 교란되었을 때 유해함. 교란은 일반적으로 해체나 개보수작업과 같은 건축물 작업이 원인이 됨.
- 특히 석면의 제거, 보관, 폐기에 대해서는 NSW법률, 규정과 석면의 관리정책인 주환경계획정책(SEPPs)을 포함하여 국가와 주의 기준들이 있음. 건축현장은 작업보건안전규정 하에 NSW 산재보상기구에 의해 관리됨.
- 이 정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석면관리와 관련된 Strathfield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주요사항을 정함.
 - 사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석면의 불법 폐기 또는 보관에 대한 민원 관리 및 조사
 - 안전한 석면 제거 및 폐기의 관리 및 규제
 - 특히 건축물 철거, 석면 폐기물의 제거 및 운반에 대하여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1.3 정책의 목적

-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제거 및 운반하도록 함
- 공동체의 석면의 위험과 안전하고 정확한 제거, 운반, 폐기 방법에 대한 인지를 높임
- 불법 석면 폐기물 보관 및 폐기의 보고 및 조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1.4 정책의 적용범위

- 이 정책은 Strathfield 지방정부 지역에 적용함.

1.5 정의

- 승인된 시간이란 인가대상 건축물 작업의 승인이나 개발인가에서 규정된 건축작업의 허가 시간을 말함.
- 건축 현장이란 그 곳으로부터의 차량계 운행, 제거 및 운반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하여 건축(오염된 지역의 복구를 포함하여), 철거, 설치, 변경 그리고/또는 굴착 작업이나 작업준비가 수행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을 의미
- 시는 Strathfield 시를 의미
- 철거는 구조물 전체 또는 부분적인 해체를 의미
- 개발은 1979년의 환경계획평가법상 용어의 의미를 가짐
- PPE는 개인보호구를 의미하고, 석면의 안전한 취급에 관련된 모든 법률과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보호복 또는 다른 보호장비의 모든 아이템을 포함
- NATA 승인된 실험실은 국가 시험협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실을 의미

2.0 정책내용

2.1 석면의 위험성

- 석면은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건축된 많은 빌딩에서 발견될 수 있음. 2003년 이후에, 석면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금지됨.
- 석면은 특별한 용도로 묻혀지고 형성되어 채굴되고 합성된 것으로서 많은 섬유소로 구성된 규산염광물에 대한 통칭임. 건설산업에서 석면의 사용은 인장력, 고온에서의 안정성, 내화학적 및 내식성 그리고 절연성을 갖는 석면고유의 특성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됨.
- 일반적으로 안정된 조건에서 석면의 존재는 위험하지 않음. 그러나 불안정

한 상태에서는 위험함. 불안정은 통상적으로 해체나 수리활동을 말하며, 이는 석면 또는 유사석면을 함유한 물질의 해체, 제거, 운송 및 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과 정책이 필요한 이유임.

- 어떤 물질이 석면을 단순히 보이게 포함하고 있다면 건립은 불가능함. 석면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취급하기 전에 자격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적절하게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함.
- 석면의 폐해는 미세섬유소가 상당시간 동안 흡입할 수 있도록 잔존하여 공기 중으로 분산에 기인함. 작은 섬유소는 사람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호흡할 때 폐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가장 위험함. 공기 중에 떠 있는 석면섬유소의 호흡으로 중요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석면증, 폐암, 중피종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됨. 질병은 최초 노출로부터 증상의 시작이나 질병의 발견까지 20년 이상 지연될 수 있음.

3.0 석면의 종류

- 크게 두가지 그룹의 석면으로 분류

1. 일반적으로 “백석면”으로 알려진 온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사문석 계열. 과거에 온석면은 다음의 제조에 사용되어 왔음. 최근까지 온석면은 가스켓, 브레이크 및 클러치 라이닝과 같은 포장제 및 마찰제로 주로 사용되었음.
 - 석면복, 테입, 로프 및 포장용 가스켓, 그리고 보온제와 화학적 절연제
 - 건설용 석면시멘트 시트 및 파이프, 전기/통신서비스용 방수케이스
 - 고무, 플라스틱, 열경화성 합성수지, 접착제, 페인트, 코팅, 코킹 화합물
 - 보온용 밀폐제, 전기 및 절연제
 - 화재관련 문, 빌딩의 구조체 빔 및 장비
 - 충전제 및 필터 등
2. 각섬석 계열은 아모사석면(갈석면)과 청석면과 트레모라이트, 액티노라이트 및 안소필라이트와 같은 약간의 다른 석면을 포함. 1980년대 초까지 아모사석면 및 청석면은 많은 제품에 사용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는 각섬석 계열의 모든 타입의 석면의 사용은 금지됨.

3.1 결합되고 부스러지기 쉬운 석면

- NSW 규정에 의거 석면은 각각 결합성이나 이쇄성(부스러지는 정도)에 따라 분류됨.
- 화합물(견고하게 결합) 석면은 석면을 포함하는 어떤 물질도 해당되며, 이는 포트랜드 시멘트나 다양한 합성수지/결합물과 손으로 으스러뜨릴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됨. 석면을 포함한 화합물질은 국내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함. 주로 석면 15%이상의 복합 화합물(시멘트와 같은)로 제조됨. 석면을 포함한 화합물질은 고체나 상당한 고형이고, 석면섬유소가 물질에 단단하게 결합됨.
- 석면 화합물은 다음을 포함함
 - 석면 시멘트 파이프(전기, 물, 배수 및 소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 전기 계량기 판
 - 석면플랫, 지붕과 벽의 피복과 울타리에 사용되는 파형 혹은 압착된 석면시멘트 시트
- 부서지기 쉬운(느슨하게 결합된) 석면은 가루형태 혹은 건조시 손에 부스러지기 쉬운 석면을 포함하는 물질임. 이것들은 국내의 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음. 소방처리, 가공 및 단열에 필요한 상업이나 산업환경에 주로 사용됨. 오래된 국내의 히터, 스토브, 온수시스템, 보온재 연계파이프 및 비닐과 리놀륨 바닥 피복재에서 발견될 수 있음.
 - 마분지
 - 보일러 피복재
 - 석면복 및 로프
 - 파이프 피복재
- 풍화 혹은 빗발, 화재나 물폭발에 의한 손상을 받은 모든 석면시멘트 제품들은 부스러지기 쉬운 석면인지를 고려되어야 함.

3.2 결합되고 부스러지기 쉬운 석면의 제거

- 석면제거자들의 면허는 NSW 산재보상기구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됨. 폭파와 석면의 제거에 대해서는 산재보상기구로부터 승인되어야 함.
- 2008년 1월 1일 이후 석면화합물의 10분의2 이상 제거를 위해서는 NSW에 석면화합물 면허를 받아야 함. 면허를 취득한 석면화합물 제거자는 석면화

합물의 어떤 양도 제거할 수 있음. 석면면허의 두가지 형태는 A 등급과 B 등급의 면허로 구분됨.

- A 등급 면허 : 취급자는 부스러지고 결합된 석면 모두에 대한 작업을 수행
- B 등급 면허 : 취급자는 결합된 석면에 대한 작업만 수행

4.0 개발

- 석면은 흩날릴 때 위험함. 석면은 풍화, 비나 기후조건에 따라 흩날릴 수 있지만 교란은 대부분 파괴, 개조나 수리 같은 빌딩작업 때문에 발생함. 작업의 주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음.
 - 정식으로 Strathfield 시의 개발 신청이 요구됨
 - 개발은 주 환경계획정책국(SEPPs)과 공식적인 개발신청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시계획투자국에 의해 “개발의 면제와 적용”이 고려됨.
 - 집주인이나 거래자에 의한 소규모의 ‘스스로 처리’작업은 개발허락이 요구되지 않음.

4.1 개발과정

- 시는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예상되는 개발에 대한 승인이나 허락에 포함되는 특별한 조건을 준비해야 함. 이러한 허락조건의 목표는 개발활동 중에 안전한 석면작업의 실행과 조절 및 처리절차의 요구에 의해 석면이 환경에 노출의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임.
- 포함 조건
 - 호주 기준 AS-2601에 따른 파괴 - ‘구조물 파괴’ 혹은 그 다음의 기준과 관련 규정
 - 빌딩 해체는 면허있는 해체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현장에서 작업시작 전에 면허사본을 시와 주관 인증당국에 제시되어야 함.
 - *주) 허락이나 비허락이 요구된다면 해체작업과 석면처리는 산재보상당국에 의해 최소한 규정량이 아니라면 당국에 의해 승인된 계약자에 의해 해체 및 제거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 석면을 포함한 물질의 해체나 제거작업시 작업 및 작업전에 현장에서 인증당국에 승인된 현장임을 상세사항을 입증해야 함.

- 정리된 현장은 토양의 부식과 부산물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하게 안정화가 필요함.

- 또한, 신청자는 개발조건의 준수는 물론 석면의 제거에 대하여 주변의 이웃에게 통지하여야 함. 신청자나 대리인은 서면으로 부근의 모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개발의 다른 측면을 통지하여야 함. 통지는 석면 제거 일시, 전화, 팩시 및 이메일주소 등을 포함한 계약자와 함께 승인받은 제거자를 포함함.

② 작업건강 및 안전정책

제목	작업 건강 및 안전 정책
정책번호	PL-001-WHS
시행일자	2012. 1. 12
책임	시민 및 수행조직
관련법률	-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2011
관련정책	- Work, Health and Safety Systems Plan - Associated WHS policies

1.0 서론

1.1 제목 및 서론

- 이 정책은 작업건강 및 안전 정책임. 이 정책은 2012년 1월 12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에 시에서 채택한 '작업건강 및 안전정책(OH&S Policy)'을 대체함.

1.2 정책의 배경 및 제정사유

- 2012년 1월 1일부로 '작업건강 및 안전법 2000'은 폐지되고, '작업건강 및 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로 대체됨. 새로운 규정은 국가 작업건강 및 안전체제와 연방규정을 뒷받침함.
- 이 정책은 시소재 작업장에서의 작업,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주, 공무원 및 근로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제정됨.

1.3 정책의 목적

- 이 정책의 목적은

- 작업관련 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고
- 공무원과 근로자의 지식과 안전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

1.4 정책의 적용범위

- 이 정책은 모든 Strathfield Council 시의 근로자와 공무원에 적용됨

1.5 정의

- PCBU : 이 법(WH&S Act)에서, PCBU는 '사업을 하거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Strathfield Council 시는 사업주로서 PCBU에 해당함.
- 작업자(Worker) : 이 법(WH&S Act)에서 작업자란 근로자, 계약수행자, 자원봉사자, 작업유경험자 및 기타의 사람을 말함.
- 공무원(Offcer) : 이 법(WH&S Act)에서 공무원이란 관리자와 감독자를 말함.

2.0 정책내용

- Strathfield Council 시는 우리 근로자와 우리의 작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여기에는 작업, 건강 및 안전(WHS)관련 규정을 이행하여 우리의 작업자를 보호하고, 작업건강안전(WHS)의 사례와 절차를 실제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포함됨.
- Strathfield 시에서 우리는 작업과 관련된 부상과 질병은 예방가능하며, 그러한 안전과 건강의 실제적용은 시의 활동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임
- 특히 우리는
 - ✓건강과 안전관리 전략 및 절차의 사전 이행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의 제공하도록 하는 작업자 계획의 독려 및 인식
 - ✓위험의 식별, 위험성 평가 및 통제에 관한 직업 위험관리 절차에 의한 위험의 조절
 - ✓효과성을 유지하도록하는 위험통제 측정방법의 점검 및 재검토
 - ✓격의 없는 의사소통,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작업자들의 참여
 - ✓안전과 보건의 수행에 대한 활동과 보고 및 측정과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 ✓가능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과 정보의 제공

✓적합한 지원과 자원의 제공

✓피고용인과 계약자에 대한 WHS 책임성의 적용에 대한 요구

✓신고대상 사고의 보고

✓효과적인 부상과 사회복귀 관리의 제공

- 작업 건강 및 안전은 관리감독자 책임의 필수적인 부분임.
- 모든 작업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작업장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합당한 지시,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모든 작업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
- 시는 명문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유지할 것이고,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것임. 시스템의 이행과 유지는 모든 관리자와 감독자의 리더쉽 발휘와 모든 작업자들의 헌신과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III. 시사점 및 소감

IV. 시찰자 명단, 관련 사진 등

본 자료는 공단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삭제 되었습니다. 동 조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overseas@kosha.net으로 이메일을 송부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확인 후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